



서울시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이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정책위원회 중대재해TF



가이드를 제작함에 있어...

가이드 제작 취지

- 법률과 넘쳐나는 매뉴얼과 설명자료들 속에서 혼란을 겪는 실무자들을 위한 기본 자료 제작의 필요성으로 시작
- 법률적 지식의 제약으로 가이드 제작을 망설였으나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관들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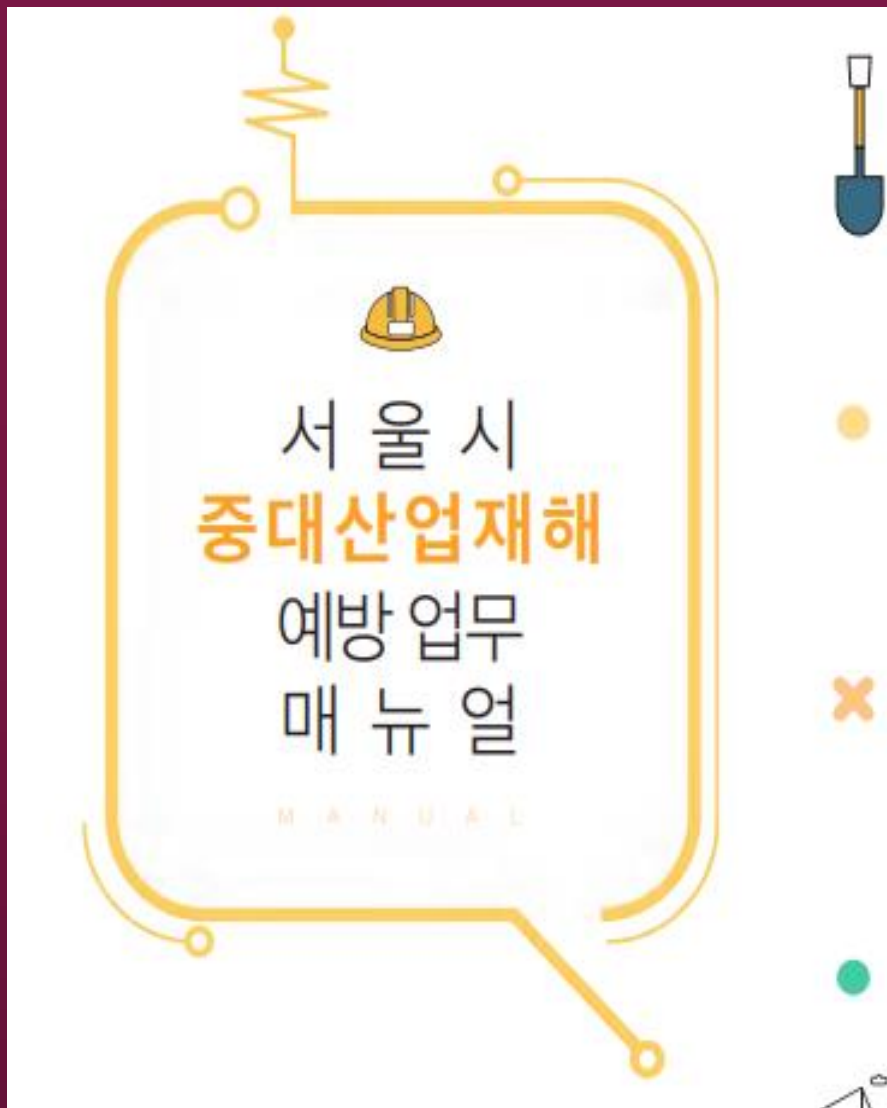
가이드 제작에 있어서 한계점

- 비법률 전문가 그룹이 제작함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참조
- 법무법인 대륙아주 자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전관리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에 사전 상태를 근거로 처벌

참고문헌



노인종합복지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 본 계획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실무에 필요한 안내를 위해 마련하였음.
- 본 계획에서 설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서식은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변경·활용할 수 있음.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은 본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본 계획을 참고하되,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계획 수립 및 의무사항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바람.

2022. 7.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

Index

2022. 서울시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가이드



0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02 중대산업재해

0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04 중대시민재해

05 Q&A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방안

법인과 관 계

- 최종 책임 : 법인 대표, 안전관리책임 : 시설장(관장)
- 기관의 안전관리원은 실무자이외의 책임을 가지지 않음
- 양벌규정 : 법인대표는 명목적/실질적 책임, 시설장은 실질적 책임

11월 : 익년도 사업계획(예산계획) 및
(법인) 시설안전관리 방안 제출요구

0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철차

- 전년도 조치사항
- 예산계획(기능보강포함)

02

12월 : 법인 보고

- 익년도 1월 담당자 지정
- 상·하반기 위험성 평가 보고

03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이해

-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법인대표)가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성에 따른 의무이행, 실질적인 점검 수행 등을 확인
-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가이드북을 만들었으나 법무법인 자문의 경우 ‘보고 절차 및 조치절차’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방안’은 중대재해 TFT 의견이며, 각 기관별 적용이 필요

1

서울시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 주요 정의

● 중대산업재해(법 제 2조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 중대시민재해 (법 제2조 제3호)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할 경우

(3. 중대시민재해 에서 자세히 설명)

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종사자(상시근로자+도급·용역·인력 등) > 상시근로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종사자 / 상시근로자 *주요정의 다. 종사자 내용 참고 문제발생시 - 종사자 적용시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의무주체	경영책임자(개인)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사업주(개인, 법인)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내용	복지관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관리체계구축, 이행점검 등)	사업장내 안전·보건조치 (위험물 제거, 추락방지 등)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법무법인
TIP

-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정여부는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름
-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원안대로 파견근로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산정하여 대비함이 필요

2

중대산업재해

서울시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이드

2. 중대산업재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관련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사회복지서비스업 의무없음)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사회복지서비스업 의무없음)
-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면제)
- ②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및 조치
- ③ 위험기구, 설비 사용에 따른 관리대책
- ④ 위험 업무에 대한 관리대책
- ⑤ 계절성 업무에 따른 관리대책
- ⑥ 재해유형에 따른 관리대책

2. 중대산업재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관련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①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 ②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소한 재해라도 반복된다면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시정조치
- ②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함.

3

서울시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이드

월별중대산업재해 실행추진계획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월별 실행추진계획'은 중대재해 TFT 의견으로 기관별 논의 필요

점검 내용	점검 주기	1월	5월	6월	7월	11월	12월
중대재해예방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설정 (13P. 참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표준안 참고)	반기 1회 이상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 점검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시설 유해, 위험요인조사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 유해·위험요인개선조치 이행점검 (14P.~19P. 참고 / 붙임 1.~4. 참고)				√			√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20P.~21P. 참고)		√			√		
3.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평가 (14P. / 22P.~23P. 참고)				√			√
4.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하고, 개선 방안 이행여부 점검(23P.~24P. 참고 / 붙임 5. 참고)				√			√
5.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24P. 참고 / 붙임 6.~7. 참고)				√			√
6.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 위탁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기준·절차 준수여부 점검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점검 (26P.~30P. 참고 / 붙임 9.~12. 참고)			√			√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 점검 (31P.~38P. 참고 / 붙임 18.~20. 참고)				√			√
8.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및 점검 (32P.~33P. 참고 / 붙임 13.~14. 참고)				√			√
9. 비상조치 훈련 실시 점검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26. 참고 / 붙임 8. 참고)			√			√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 위험성 평가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행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실시

<위험성 평가>

- 최초 위험성 평가 시 반드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_붙임 3.)를 작성
- 이후 평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규정을 관리 및 개정 필요

붙임 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사업장 표준문서

『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

2022. . .

사업장명 : _____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 위험성 평가예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공정(작업)명	조리	작성자	○○○ 부장(과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수행일시	2022.00.00	확인자	○○○ 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작업자	○○○ 조리사, ○○○ 영양사		

□ 유해·위험요인 조사

유해·위험작업				질병의 위험
작업내용	장소	위험정도 (상·중·하)	사고 유형	질병 유형
조리이후 조리실 청소	경로식당	상	넘어짐	염좌, 골절
조리기구 세척(세척기 사용)	경로식당	상	감전	화상 등

사고의 유형

- ① 떨어짐
- ② 넘어짐
- ③ 깔림
- ④ 부딪힘
- ⑤ 맞음
- ⑥ 무너짐
- ⑦ 끼임
- ⑧ 절단, 베임, 찔림

- ⑨ 감전
- ⑩ 폭발, 파열
- ⑪ 화재
-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 ⑬ 이상온도, 물체접촉
-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 ⑮ 기타

질병의 유형

- ① 진폐
- ② 중독
- ③ 난청
- ④ 요통
- ⑤ 기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공정(작업)명	조리	작성자	○○○ 부장(과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수행일시	2022.00.00	확인자	○○○ 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작업자	○○○ 조리사, ○○○ 영양사		

□ 유해·위험요인의 종류

1. 기계적 요인	■ 협착 위험(감김, 끼임) ■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위험 ■ 충돌 위험 ■ 넘어짐 위험(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추락 위험
2. 전기적 요인	■ 감전(안전전압 초과) □ 아크 ■ 정전기 □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가스, 증기, 에어로졸, 흙 □ 액체, 미스트, 고체(분진) ■ 반응성 물질, 방사선 ■ 화재/폭발 위험
4. 생물학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유전자 변형물질 ■ 알리지 및 미생물 □ 동물,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소음, 초음파, 초저주파음, 진동 ■ 종사자 실수(휴먼 에러) □ 저압 또는 고압상태, 질식 위험, 산소 결핍 ■ 중량물 취급 작업, 반복 작업 □ 불안정한 작업 자세, 작업(조작) 도구
6. 작업환경 요인	■ 기후, 고온, 한랭 ■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주변 종사자, 작업 시간 □ 조직 안전문화 ■ 화상 ■ 작업(조작) 도구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 위험성 평가예시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공정(작업)명	조리	작성자	○○○ 부장(과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수행일시	2022.00.00	확인자	○○○ 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작업자	○○○ 조리사, ○○○ 영양사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	√		
2.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위탁, 용역 등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	√		
4. 동종업체의 산업재해를 조사 및 참고하여 위험요인을 파악	√		
5. 파악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리	√		
6.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화학물질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		√	
7.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또는 화학물질 도입 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관리	√		
8.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 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 여부	√		
9. 작업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파악	√		
10. 새로운 작업의 경우 작업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업 위험을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실시방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제거·대체·통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공정(작업)명	조리	작성자	○○○ 부장(과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수행일시	2022.00.00	확인자	○○○ 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작업자	○○○ 조리사, ○○○ 영양사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	√		
2. 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		
3.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가 참여하고, 사업주의 검토가 있어야 함	√		
4.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 마련 시 제거 → 대체 → 통제 → 보호구 순으로 검토	√		
5. 위험요인 별 개선 방안 마련 시 가능한 공학적 통제 방안 이상으로 복수의 방안을 마련	√		
6.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이 결정되면, 개선 시기, 예산·배정 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7.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하고 이행 점검	√		
8.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	√		
9.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	√		
10.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작성	√		
11.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 * Lock Out - 시건장치/Tag Out - 수리 중 작업 중의 표찰	√		
11.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 위험성 평가예시

KRAS(위험성평가)

(<http://kras.kosha.or.kr>)

공정명: 조리 외 2건		체크리스트					평가일시: 2022-00-00		
대상	유해위험요인	현재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예정일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적정	보완			
조리	주방,홀 등은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고, 바닥에 배관, 식품기계, 자재등이 있을 경우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을 확인하였는가?	1(하)	2(중)	2(낮음)	√				ooo
조리	조리기구(조리용칼, 채칼 등)에 베이거나 찢리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장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1(하)	2(중)	2(낮음)	√		전처리 식자재 비율을 높이고, 절단용 장갑의 추가 비치	2022.00.00	ooo
조리	조리용 기계류의 사용 시 누전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1(하)	2(중)	2(낮음)	√				ooo
조리	젖은 손으로 꽃음접속기의 접속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로 꽃음접속기를 취급하고 있는가?	1(하)	2(중)	2(낮음)	√				ooo
조리	조리 작업 시 발생하는 증기와 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가?	1(하)	2(중)	2(낮음)	√				ooo
조리	조리된 고온의 음식물 취급 시 화상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장갑과 앞치마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1(하)	2(중)	2(낮음)	√		전기소독고의 사용 시 화상의 위험이 높음에 따라 안내문 등 정비 필요	2022.00.00	ooo
조리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요인 및 대처요령 등의 유해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1(하)	1(소)	1(낮음)	√				ooo
조리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취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2(중)	2(중)	4(보통)		√	5kg 이상 중량물 취급 시 2인 1조 운반 실시, 영양사 식재료 발주 시 가급적 5kg 이상 중량물 구입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2022.00.00	ooo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 위험성 평가예시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회의일시	2022년 ○○월 ○○일 14:00 ~ 18:00
회의장소	○○○회의실

□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회의 결과> - 전기소독고 안내문 변경, 화상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림 - 화구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비 변경 등에 대한 법인 보고 진행
	<보고절차> - 회의결과에 대해 법인으로 보고 진행 - 자치구 담당부서에게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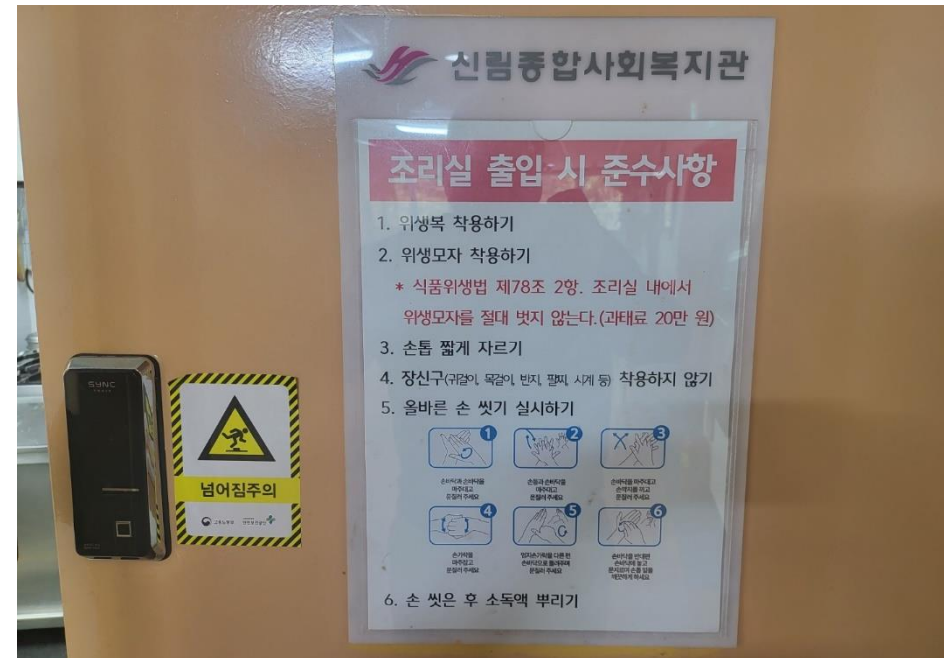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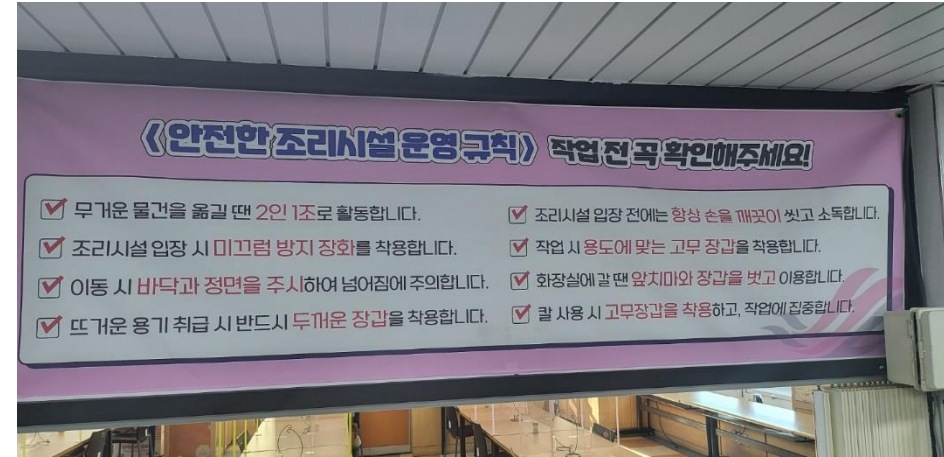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명	서명	소속/직책	성명	서명
관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부장	○○○		팀장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팀장 (관리감독자)	○○○	
팀장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인 (관리감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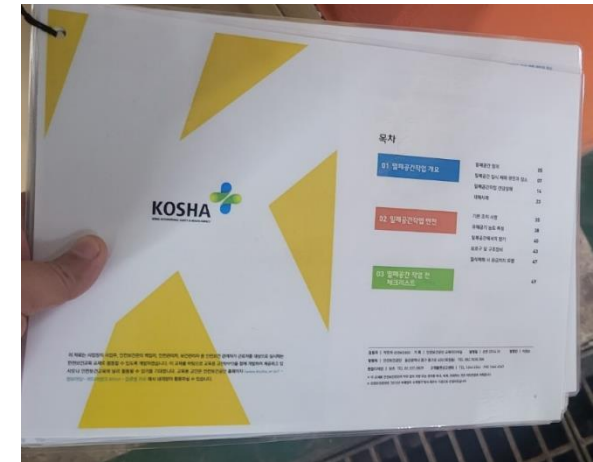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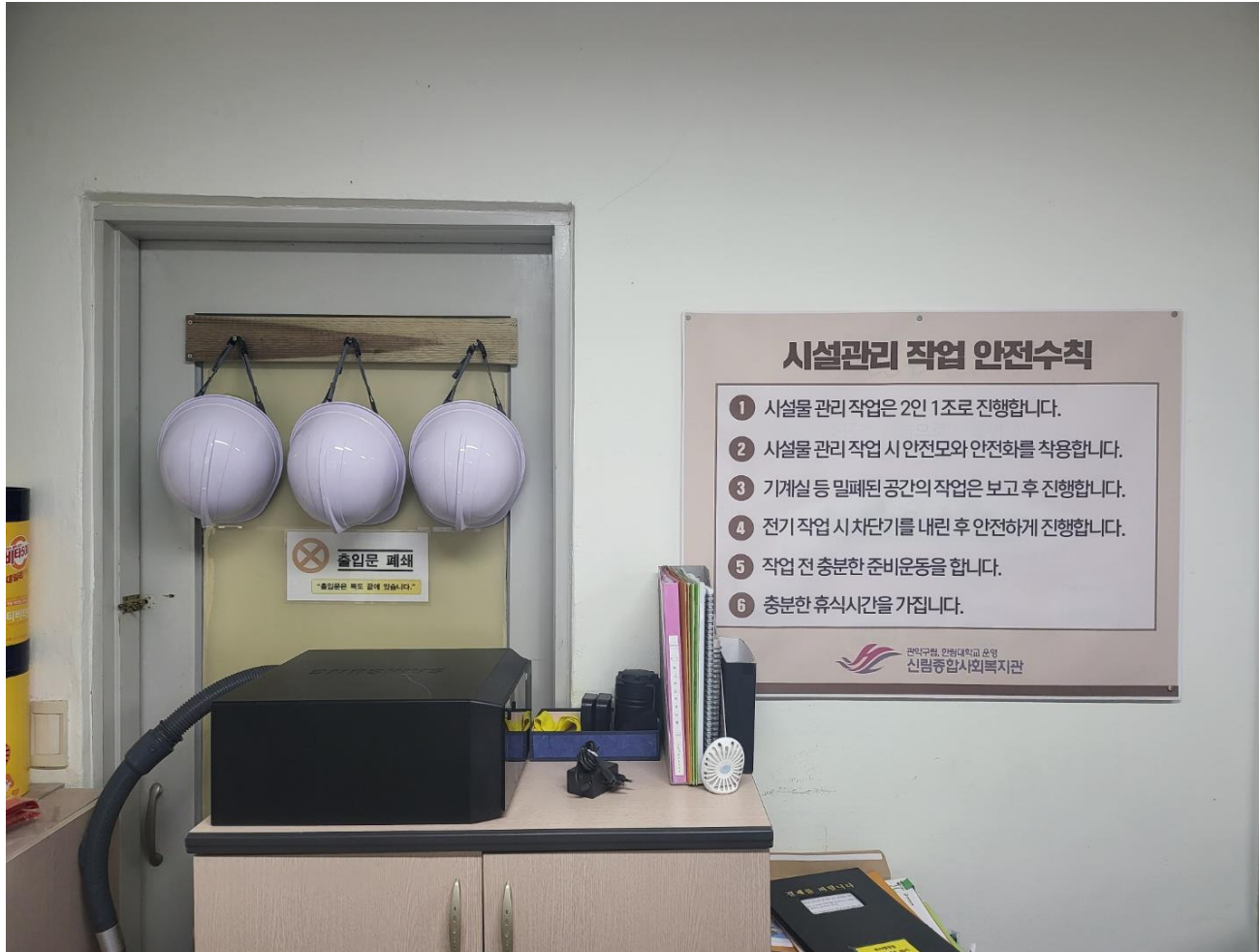
KRAS(표준 위험성평가) (http://kras.kosha.or.kr)

작업공정명 : 조리		위험성평가						평가일시 : 2022.00.00			
		공정설명		단체급식소 조리(식사배달 포장)			해당설비	조리식기 전체, 식기건조기, 전기소독기, 고압수 등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 근거 (법적 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 일	담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기계적 (설비 적요인)	화구 노후화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	안전보 건규칙 제487조 [유지·관 리]	노후화된 화구사용 금지	중	중	높음	노후화된 화구교체	낮음	2022. 00.00.	2022. 00.00.	팀장 (관리 감독자)
전기적 요인	식기세척기, 전기소독기 사용시 감전위험	안전보 건규칙 제302조 [전기기 계·기구 의 접지]	사용 시 안내문 재부착	하	중	낮음	사용과 관련된 안내문 보완 및 위험성 표시 등 부착	낮음	2022. 00.00.	2022. 00.00.	팀장 (관리 감독자)
작업특 성요인	식기세척기, 전기소독기 사용시 화상위험	안전보 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 지]	사용 시 안내문 재부착	하	중	낮음	사용과 관련된 안내문 보완 및 위험성 표시 등 부착	낮음	2022. 00.00.	2022. 00.00.	팀장 (관리 감독자)
	조리기구 사용시 베이거나 찢리는 위험 예방 필요	안전보 건규칙 제32조 [보호구 의 지급 등]	전처리 식재료 비율 증가 및 절단용 장갑 비치	중	중	보통	전처리 식재료 비율 증가 절단용 장갑 비치	낮음	2022.	2022.	
작업환 경요인	물청소 진행시 미끄러짐 낙상위험	안전보 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물청소 진행 시 충분한 인력 및 공간확보	하	중	낮음	물청소 진행 시 충분한 인력 및 공간확보	낮음	2022. 00.00.	2022. 00.00.	팀장 (관리 감독자)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 위험성 평가예시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 위험성 평가예시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⑨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영역	항목	세부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운영관리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재해발생 수준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보건소, 소방서, 병원 포함)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⑨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 적용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기업

업체별계획서 및 시행여부 확인(서면)

단순 공사 등

안전교육 및
동의서 작성



안전장비 비치
및 활용



미비시 사유서
(2인 1조 등)



‘도급, 용역, 위탁 시 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적용방안은 중대재해 TFT 의견이
며, 각 기관별 논의 필요

3. 월별 중대산업재해 실행 추진계획 -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 적용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의견

- 개별 복지관 또는 복지관 운영법인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동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설령 시설장(복지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놓았다고 하여도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관리인력이 선임되어 있는 이상 적극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안전관리인력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는 것을 권고함

4

서울시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이드 중대시민재해

4. 중대시민재해 - 주요정의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 생활속 거리두기 함께해요!

● 법 적용범위



도봉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 공중이용시설의 내·외부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은 법 제93조

민재해 예방

른 안전 및

등)도 함께

<중대재해처

- 제3조(공공

의 부분 본

이란 다음 각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
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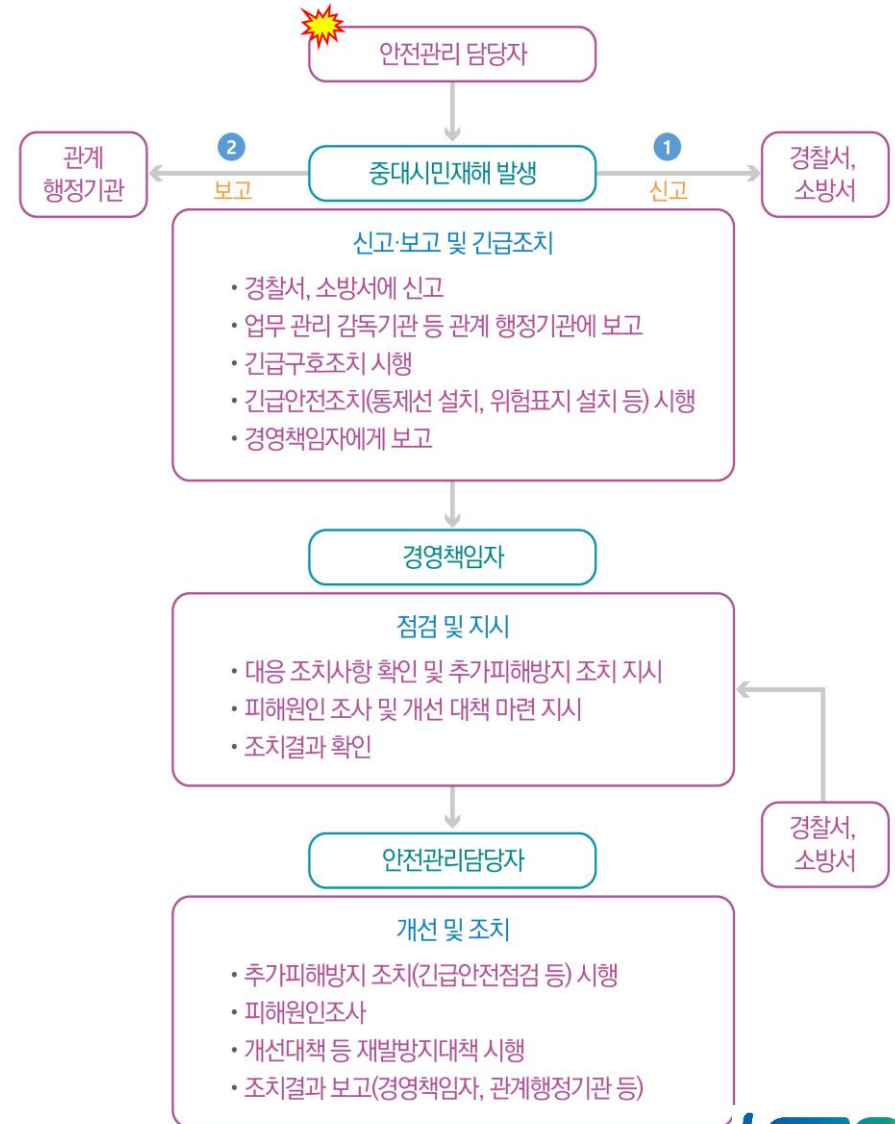
4.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자의 범위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중대산업재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망. 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법 제2조제3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복지관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1명 이상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하나의 사업주, 법인·기관에서 관리·통제하는 재해요인 중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중대시민재해



2022. 서울시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가이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정책위원회 중대재해TFT

Q&A
